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4
----------	-------

제출년월일 : 2015.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된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이름 및 본칙의 내용을 정비
 - 성평등 → 양성평등
- 나.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신설(안 제7조제2항제4호)
 - 양성평등정책의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다.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6조제1항)
 -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안 제17조제3항

및 제30조)

-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함
- 여성주간행사 → 양성평등주간 행사

마.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0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5. 21. ~ 6. 10.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 있음

- 평가대상 : 제2조(정의)제3호
- 평가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여성친화도시'의 내용으로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 권고안 반영(여성친화도시 정의 수정)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평가대상 : 제12조(회의)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평가결과 : 마포구 관련 안전을 마포구 공무원이 심의할 때 이해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마포구 공무원인 위원을 제척하는 결과가 나옴
 - 조치사항 : 권고안 반영(제12조제6항제2호 삭제)
- 라. 2015년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심의보류
- 보류이유 : 구 재정이 수반되는 의무조항은 상위법령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조치사항 : 제17조제1항의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제20조제2항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8. 18)
-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사.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를 “양성평등을 실현하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평등”이란”을 ““양성평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친화적 도시”란”을 ““여성친화도시”란”으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를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성장과 안전”을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으로 한다.

제3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6조의 제목“(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을“(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성평등 정책”을 각각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성 평등정책”을 각각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성평등정책의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 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성평등 촉진 정책”을 “양성평등 촉진 정책”으로 한다.

제15조 중 “여성의”를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로, “여성의 참여”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육아 휴직제”를 “육아휴직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을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비혼가족”을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으로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을“(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 의식 제고와 여성공무원의”를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관련기관간”을 “관련기관 간”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여성의 복지증진)”을“(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여성의 건강증진)”을“(건강증진)”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여성친화적 도시조성)”을“(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을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여성주간 행사 등)”을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여성단체 등의 지원)”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35조 중 “성평등촉진”을 “양성평등촉진”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을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42조제1항 중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마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성평등위원회, 성평등기금,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u>성평등</u>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u>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u>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평등</u>”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u>성별영향분석평가</u>”란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 「<u>양성평등기본법</u>」 ----- ----- ----- <u>양성평등</u> ----- ----- ----- <u>양성평등을 실현하며</u> ----- ----- ----- ----- -----</p> <p>제2조(정의)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양성평등</u>”이란 ----- ----- ----- ----- ----- 2. ----- ----- -----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 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적 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

----- 양성평등 -----
----- 양성 -----
----- 평등 -----
----- . -----

3. “여성친화 도시”란 -----

----- 마 -----
----- 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

-----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양성평등 -----

----- 「양성평등기본법」 -----
----- 양 -----
성평등 -----
----- .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

든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양성평등-----
-----.

② ----- 양성평등 -----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양성평등-----

-----.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 양성평등정책-----
----- 양성평등정책 -

-----.

② -----
-----.

1. 양성평등정책-----

2. 양성평등정책-----

가. ~ 사. (생략)

-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가. ~ 사. (현행과 같음)

- 3. 양성평등정책 -----
- 4. 양성평등정책-----

- 5. 양성평등정책 -----

- 6. ----- 양성평등정책-----

③ -----

----- 양성평등위원회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② -----
-----.

- 1. 양성평등정책 -----

- 2. 양성평등정책 -----

- 3. 양성평등정책 -----

<신 설>

4. ~ 6. (생 략)

제8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4급이상 공무원
2.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생 략)

제12조(회의) ① ~ ⑤ (생 략)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생 략)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

제1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여

4. 양성평등정책의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급 이상 -----
2. 양성평등정책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제15조(적극적 조치) ----- 차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모집 및 임

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
-----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
-- 양성평등-----

제16조(구정참여 확대) ① -----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

----- 양성평등-----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

----- 육아휴직제 -----

③ ----- 여성과 남성이

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 5. (생략)

② (생략)

제2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비혼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

균형있게 임용될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

1. (현행과 같음)

2. -----

양성평등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

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

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성평등 의식 제고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

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 조성)

① -----

----- 양성평등 -----

② -----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

③ -----
----- 양성평등 -----

제2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

매 범죄의 방지 등)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등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②
(생략)

제26조(여성의 건강증진) (생략)

제27조(여성친화적 도시조성)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워크”라

매 범죄의 방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련기관 간 -----

제25조(복지증진)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건강증진) (현행과 같음)

제27조(여성친화도시 조성) ----

-----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제28조(여성네트워크) ① -----
-- 양성평등정책-----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9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여성주간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
양성평등정책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 양성평등-----
-----.

제32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이나 제4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성
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
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
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
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
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성평등촉진에 현저
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
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마
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에 필요한 행정지원-----

----- 양성평등기금-----

제33조(구민참여) ① -----

양성평등정책-----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유공자 표창) -----

----- 양성평등촉진-----

제4장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

----- 양성평등-----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③ (생략)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9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기금

제40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양성평등정책 -----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 양성평등정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양성평등 -----

-----.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40조(기금의 설치) 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정에 따라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신설>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사업

2. ~ 6. (생략)

②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

② 기금-----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략)

⑤ (생략)

제44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생략)

제4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급 이상 -----
2. 양성평등정책-----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

소속 공무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정책 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김보미
연 락 처	02-3153-8922